

순천시의회 공고 제2016-28호

「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2월 9일

순 천 시 의 회 의



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취지

-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, 상임위원장 선거대상을 확대하여 의원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“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” 중 “상임위원중에서”를 “의원 중에서”로 변경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6. 12. 9. ~ 2016. 12. 13. (5일간)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(순천시의회의회)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061-749-4958, 팩스 061-749-4773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붙임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상임위원중에서”를 “의원 중에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상임위원장) 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장은 <u>상임위원중에서</u>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6조(상임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의원 중에서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